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정원 외 입학전형의 신설 및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의 보완을 통해 재직자 또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원 외 입학전형을 신설함(안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신설)

나. 재직자 특별전형의 연령 기준과 학력 기준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안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무 경력은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졸업·이수 전과 후의 모든 근무 경력을 포함하되, 졸업·이수 직전 학기가 아닌 재학 기간 중의 근무 경력은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1)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 중 “특성화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 -----.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의2. <u>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u>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14. ----- ----- ----- -----

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생략)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후단 신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한정한다). 이 경우 근무 경력은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졸업·이수 전과 후의 모든 근무 경력을 포함하되, 졸업·이수 직전 학기가 아닌 재학 기간 중의 근무 경력은 제외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2) (생 략) 3) <u>특성화고등학교</u>등을 졸 업한 사람 4) (생 략) 라. (생 략) 15. · 16. (생 략) ③ ~ ⑥ (생 략)	----- ----- 2) (현행과 같음) 3) 「<u>초·중등교육법</u> 시행 령」 제76조의3제3호에 따른 <u>특성화고등학교</u>--- -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5.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18